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기·공연 방해행위 금지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2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9. 05.
3. 회 부 일 : 2024. 09.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기장, 공연장, 흥행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이하 ‘공연 등 방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경기·공연장 등의 방해) <u>경기장, 공연장, 흥행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u>

공연 등 방해행위는 다수의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전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연 등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시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범죄 처벌법」의 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공연 등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정해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의 경우 공연 등의 주최자와 관람객 사이의 민사상 계약 관계에 따라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적에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쓰레기투기’, ‘의식방해’, ‘무단 출입’ 등의 조항¹⁾을 적용하여 공연 등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경범죄의 수준을 넘어

1)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10. (생략)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 19. (생략)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 22. (생략)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 41. (생략)

② ~ ③ (생략)

서는 불법에 대하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²⁾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

2)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